

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4. 10. 11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현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에 의거 시·군·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읍·면·동장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을 교부하고 있으나 읍·면·동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례 권한위임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
-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·초본 교부시 시장·군수·구청장 명의로 교부됨으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의 규정과 불일치됨으로 개정이 필요함.

2. 주요골자

-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·초본 교부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명의로 교부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) 뿐만 아니라 읍·면·동·출장소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(2004.3.22, 법률 제7201호)되어 관련 주민등록업무의동위임조례(제2조) 권한의 위임중 등·초본 열람 및 교부 관련 규정 삭제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주민등록법 제18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권한의 위임) ① (생략) 1. ~ 2. (생략)</p> <p>②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제1항의 기타 사무 <u>중 법 제18조, 영 제43조에 의한 주민등록표 의 열람 및 등본 또는 초본 교부에 관한 사 항은 구청장도 처리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2조(권한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